장수군
JANGSU COUNTY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99 호 2022. 12. 01.(목)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620호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장수군 조례 제2621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7
장수군 조례 제2622호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3
장수군 조례 제2623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장수군 조례 제2624호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장수군 조례 제2625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장수군 조례 제2626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장수군 조례 제2627호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장수군 조례 제2628호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80
장수군 조례 제2629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 186
장수군 조례 제2630호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1
장수군 조례 제2631호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196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98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2
장수군 규칙 제1199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211
장수군 규칙 제120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233
장수군 규칙 제1201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35
장수군 규칙 제1202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41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2-1164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계획 ····· 248
장수군 공고 제2022-1165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계획 ····· 258
장수군 공고 제2022-1183호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86
장수군 공고 제2022-1184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계획 ····· 295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165호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 ····· 303
장수군 고시 제2022-1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이태영) ····· 304
장수군 고시 제2022-16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박춘자) ····· 305

회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620호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을 “영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4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군”을 “장수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등에 대해서는”을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신 설>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3조제1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

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 ---------- 장수군 소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 위원회의 심의·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 위원회----------.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장수군 조례 제2621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행정, 법률,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군정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5. 장수군의회 의원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실 및 사무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위원회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장수군 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과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규정(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위원의 직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제8조)
○ 사무지원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제10조)
○ 결과보고 및 자료제출 등 부서협조(제11조, 제12조)
○ 비밀엄수 의무 및 간사(제13조, 제14조)
○ 회의참석 위원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기준(제15조)
○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장수군 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부칙 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조례 제2622호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장수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장수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장수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장수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장수군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장수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공급업체,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 제21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제22조 ~ 제23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 제4조)

장수군 조례 제2623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를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로, “40일전”을 “40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을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을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를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 중”으로, “감정평가

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하도록”을 각각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을 “영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중 “공하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 중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을 각각 “(단, 2급 관사에 한함)”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별표 중 “(제46조관련)”을 “(제47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제10조의3--------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 ---------- ---------- ----------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⑤ ---------- ---------- 한차례만 연임----------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회의 등) ① ~ ④ (생략)	제4조의2(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조에 따라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2. ---------- 그 밖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

	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8조(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

변경 등)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립·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 40일 전----------. <후단 삭제> -----.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2----------.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 사용허가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 ---------- --- 사용허가---------- ----------.
1.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1. 사용허가 ---------- --------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허가 ---------- ----------
3.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	3. 사용허가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행정·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20조의2(행정·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 ---------- ---------- ----------

우를 말한다.	--------.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라 국제기구가 군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우리군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용허가 ----------.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때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재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 사용허가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 ---------- ---------- 사용허가---------- ----------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3조,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조 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 ----------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 ----------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 농업인---------- ---------- --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 채취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0조(토석 채취료) ① ------- ---------- ---------- ---------- ---------- ----------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평가법인 중 ---- 감정평가법인 등이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 등----------.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사용허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	④ ---------- 사

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용하도록 ----------.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사용하도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장수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⑥ ---------- 사용허가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	③ ----------

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 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 사용허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영 제14조 제6항 및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하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②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영 제39조제1항----------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② ---------- ---------- ---------- ---------- ---------- ---------- ----------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행정안전부장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시설관리	제50조(정의) ----------

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공하기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1. 1급 관사 : 군수관사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3. ----------(단,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4. ----------(단, 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5. ------(단, 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6. ------(단,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단,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단, 2급 관사에 한함)
9. 취사용 연료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9. ---------- (단, 2급 관사에 한함)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②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 행정안전부장관----------.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각 목----------.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 등--------.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제46조관련)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제47조관련)

1. 군 본청 가.~다(생략) <신 설>	1. 군 본청 가.~다(현행과 같음) 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2.4.2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 법령위반사항,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를 연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내용 추가(제5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 운영상황 공개 조항 추가(제7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근거 조항 추가(제12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 조례 위임사항 반영(제12조의2)

○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권고에 따라 관사운영 관리 규정 개정(제51조, 제52조, 제56조)

- 1급 관사(군수 관사)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별표 제1호 라목 신설

- 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용어 정비

장수군 조례 제2624호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하며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을 “하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제90조”를 “영 제9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조(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④ ----------. ---------- 각 호----------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각 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조례1297〉	② ---------- ---------- 하며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8. 2006.05.10. 조례1725〉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개정(‘21. 4. 20.)됨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물품의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중요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제7조의2)

○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 미비점 개선·보완 및 용어 정비

장수군 조례 제2625호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 체육회·군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③ 제2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 체육회·군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 ① ----------범위----------.
<신 설>	②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군 체육회·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신 설>	③ 제2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④ 군 체육회·군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을 통하여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체육회와 장수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제13조)

장수군 조례 제2626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

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장수군세 감면 조례」”를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제2조 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관광사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장수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수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6조(회의 등) ①·②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생 략)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	3. 그 밖에 ----------

입금 등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 ----------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장수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 ----------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 ---------- ---------- ---------- ---------- 범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 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	제2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관광사업---------- ---------- ----------

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범위--- ----------. ------- ---------- ----------.

1. 개정이유

○ 한정되어있는 투자유치 대상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사업의 종류 확대(제2조제8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추가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장수군 조례 제2627호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위상)”을 “(군기본계획의 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로, “얻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를 “받은 군기본

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를 “군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을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으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공청회)”를 “(군기본계획 공청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을 “군수는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4일전 까지”를 “14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안”을 “군기본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획시설계획 입안을”을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로, “위하여”를 “위해”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추가하여 계획시설계획”을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거”를 “않거”로,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리계획안”을 “군관리계획안”으로, “각호 및”을 “각 호 및”으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계획시설의 관리)”를 “(군계획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군계획 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영 제2조 제2항 제1호”를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포함한다) :”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위생시설 :”을 “보건위생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역) :”을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으로, “소하천 :”을 “소하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율”을 “이자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을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41조 제5항”을 “영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각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5조 앞에 “제3절 지구단위계획”을 삽입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내”를 “도시지역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높 이기”를 “높이기”로, “조례시행 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지구단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입안제안”을 “입안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일”을 “전날”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3조에 따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제 2항”을 “제2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지역 안”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절토·성토·정지”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로, “공업지역외”를 “공업지역 외”로,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외”를 “기반시설부담구역 외”로,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을 “않는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을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외”를 “지구단위계획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및 라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57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려가 있을”을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련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27”을 “별표 27”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50m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거리이상”을 “거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식물관련시설로 부터”를 “식물관련시설로부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재하여야”를 “식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미터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예망시설”을 “재해예방시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부지내”를 “사업부지 내”로, “송전선로 까지”를 “송전선로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충분이 이격하여야”를 “충분히 이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내측”을 “안쪽”으로 한다.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500m이내”를 “500m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조”를 “볕쪼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다만”을 “경우[다만”으로, “분할하는”을 “분할한”으로, “함)”을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농공단지포함)내”를 “(농공단지포함) 내”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분할 :”을 각각 “분할:”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 제1항 각호”를 “제6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별표 1의2의 규정”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을

“별표 1의2 제2호가목(2)”으로,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를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를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먹는 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제2호 나목”을 “별표 1의2 제2호나목”으로, “성토·절토”를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을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으로,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를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토를”을 “성토(흙쌓기)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6호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형질변경 허가”를 “형질변경허가”로, “「국가기술자격법 」”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확보하여

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절토・성토”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로, “절개면에 대하여는”을 “절개면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로, “형질변경허가”를 “형질 변경허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 에 의하여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을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녹지지역 :”을 “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 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2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주거

지역・상업지역 :”을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업지역 :”을 “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석채취 :”를 “토석채취:”로, “3만제곱미터”를 “3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제55조제1항 각호”를 “영 제5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를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60조제1 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의”를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을 “계획관리지역의 산지 안”으로,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 :”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거지역 :”을 “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상업지역 :”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업지역 :”을 “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녹지지역 :”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외지역 :”을 “도시 외지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을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를 “건축물: 별표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를 “건축물: 별표 21”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삭제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33조의 제목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별표 1제19호”를 “별표 1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를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제4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중 “지역안에서 의”를 “지역에서의”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 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화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로, “20미터이하”를 “20미터 이하”로, “용도지역 안”을 “용도지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자 연여건”을 “자연여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를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주거지역 안”을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안”을 “녹지지역”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안”

을 “경관지구”로, “전면”을 “앞면”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제9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을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을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범위안”을 “않는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주거지역 :”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식물관련시설”을 “식물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다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으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제56조의 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을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를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5.10.27]”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57조의2의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로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제1호 중 “취락지구 :”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하며, 같은 목 및 나목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을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업지역안”을 “공업지역”으로,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을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공업지역안”을 “공업지역”으로, “준산업단지 :”를 “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구역안”을 “구역”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의3의 제목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을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 목”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의4의 제목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재지구에

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로,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60%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의 용적

률)"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준주거지역 :"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심상업지역 :"을 "중심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일반상업지역 :"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근린상업지역 :"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유통상업지역 :"을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용공업지역 :"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 :"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준공업지역 :"을 "준공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보전녹지지역 :"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생산녹지지역 :"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자연녹지지역 :"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보전관리지역 :"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생산관리지역 :"을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계획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성장관리방

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농림지역 :”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호의 범위안”을 “각 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영 제85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 이하로 한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개발진흥지구 :”를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을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공단지 :”를 “농공단지:”로, “도시지역외”를 “도시지역 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을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

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을 "(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으로, "대지안의 건축물이나"를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로,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을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 너비"를 "너비"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상업지역 안"을 "상업지역"으로, "당해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해당"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으로, "당해 대지"를 "해당 대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자문을"을 "자문하여 그 의견을"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이상이어야"를 "1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70조 제4항"을 "제70조제4항"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위 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중 “제68조 제6항”을 “제68조제6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날로”를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0조의2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사항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행령 제57조제1의2호”를 “영 제57조제1의2호”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71조의3제1항 중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제7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를 “제71조에 따른”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과의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보 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를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영 제1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면심의 :”를 “대면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료검토 :”를 “자료검토:”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계획상임기획단”을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6조에 따라”로, “계획상임기획단”을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및”을 “「지방공무원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획상임기획단”을 “기획단”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8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6 마목(2)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8 다목 중 “근린생활시설(”를 “근린생활시설[”로,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자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동시행령 별표 1”을 “(같은 표”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금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4]

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제20조제1항제3호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표고(m)	비 고
장수읍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장수읍행정복지센터 415미터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50m	
	덕산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대성리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73m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식천리	식천마을회관 기준 90m	식천마을회관 520미터
	수분리	송계마을회관 기준 90m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산서면	신창리,하월리,사상리	면사무소기준 150m	산서면사무소 150미터
	이룡리	면사무소기준 150m	
	오산리,동화리,학선리,백운리, 건지리,봉서리	면사무소기준 150m	
	마하리,오성리,쌍계리,사계리	면사무소기준 160m	
번암면	국포리,죽산리,죽림리,노단리, 대론리,논곡리,유정리	면사무소기준 150m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교동리	금천마을회관기준 95m	금천마을회관 375미터
	지지리,사암리,동화리	번암면사무소 기준 200m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장계면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장계면행정복지센터 357미터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 송천리,월강리,명덕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200m	
	오동리	원오동회관 기준 83m	원오동회관 417미터
	대곡리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 기준 60m	논개생가지관리사무소 528미터
천천면	봉덕리,삼고리,남양리,월곡리, 장판리,춘송리,비룡리	천천면사무소 기준 150m	천천면사무소343미터
	연평리	평지회관 기준 100m	평지회관 284미터
	오봉리,용광리	오봉보건진료소 기준 100m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계남면	침곡리, 호덕리 화양리,화음리,신전리	면사무소 기준 150m	계남면사무소 374미터
	궁양리,가곡리,장안리	면사무소 기준 110m	원장안마을회관 456미터
계북면	월현리,매계리,임평리	면사무소 기준 57m	계북면사무소 473미터
	원촌리	면사무소 기준 127m	
	농소리,어전리,양악리	면사무소 기준 150m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단,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중 별표26의 하천은 제외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적용한다.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 150m 이내의 건축물 포함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8호부터 22호까지, 25호, 26호, 28호는 제외)를 말한다.

[별표 27]

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제20조의2 관련)

읍면별	지역지구명	표고(m)	비 고
장수읍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30m	장수읍행정복지센터 415미터
	대성리, 식천리, 덕산리, 수분리 외 비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60m	
	덕산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00m	
	대성리, 식천리	대성보건진료소 기준 25m	대성보건진료소 577미터
	수분리	송계마을회관 기준 30m	송계마을회관 530미터
산서면	신창리,하월리,사상리	-	산서면사무소 150미터
	봉서리,사계리,이룡리	면사무소기준 30m	
	오산리,동화리,학선리,백운리,마하리,건지리,오성리,쌍계리	면사무소기준 90m	
번암면	유정리,국포리,죽산리	면사무소기준 80m	번암면사무소 248미터
	죽림리,노단리,대론리,논곡리	면사무소 기준 30m	
	지지리,사암리,교동리,동화리	면사무소 기준 120m	
장계면	도시지역	행정복지센터 기준 20m	장계면행정복지센터 357미터
	금곡리,금덕리,무농리,삼봉리,송천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43m	
	오동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80m	
	명덕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20m	
	대곡리	행정복지센터 기준 190m	
천천면	춘송리	면사무소 기준 27m	천천면사무소343미터
	봉덕리,삼고리,남양리,월곡리,장판리	면사무소 기준 47m	
	비룡리	면사무소 기준 127m	
	연평리	평지회관 기준 36m	평지회관 284미터
	오봉리,용광리	보건진료소 기준 40m	오봉보건진료소 302미터
계남면	침곡리, 호덕리	면사무소 기준 10m	계남면사무소 374미터
	화양리,화음리,신전리	면사무소 기준 60m	
	궁양리,가곡리,장안리	면사무소 기준 76m	
계북면	월현리,매계리,임평리	-	계북면사무소 473미터
	원촌리	면사무소 기준 27m	
	농소리,어전리,양악리	면사무소 기준 37m	

※ 위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와 비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제1조(목적) ---------- ---------- ---------- ---------- ---------- ---------- ---------- 필요한 ----------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
제2장 기본계획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 ----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②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 군기본계획----------.
③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군기본계획---------- 한정한다---------- 군계획위원회---------- --------
④제3항에 의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 ---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
제5조(기본계획 공청회) ①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① 군수는 군---------- ----------.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14일전까지 ---------- ---------- ----------.
③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안---------- ---------- ---------- ----------.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 군기본계획---------- ---- 청취해야 ------.
⑤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 ---------- ------- 군계획위원회------ ---------- ---------- ---------- --------.
제3장 관리계획 제1절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 ---------- ---------- ----------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제2항에 따른 ---------- 군관리계획 ------- 공고해야 ------.
②군수는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 통지해야 ------. ---------- 해당 ---------- 않거---------- 군 홈페이지---------- ---.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따라 ---------- 군관리계획안---------- 각 호 및 ---- 각 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에 해당하지 않으면 ----------.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1. 삭제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3. 획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호전문개정 2007.07.16 조례제1776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절 계획시설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군계획 시설의 관리를 세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필요한 ---------- 군계획시설----------.
1.「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1. ---------- 「농어촌도로정비법」----------영 제2조제2항제1호----------

시설을 포함한다) : 도로업무 담당부서	---- 포함한다): ----------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2. ---------- 보건위생시설: ----------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업무 담당부서	3. ----------(구역): ----------
4.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4. 폐기물처리시설: ----------
5.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 하천업무 담당부서	5.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 소하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3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이자율---------- ----------.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지구단위계획	제3절 지구단위계획
<신 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 도시지역 내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7.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높이기 ---------- ----------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지구단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생략)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3. ----------입안제안---------- ---------- ---------- ---------- ----------

자가 부담한다.	----------.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전날---------- ---------- ---------- ---------- ---------- ---------- ---------- ---------- ---------- 각 목-------- -- ---------- ---------- ---------- ---------- ---------- 사용해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 ----- 않아도 ----------

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같은 법 제20조제1항---------- ---------- -- 제2항---------- ---------- 않는 ----------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 ---------- ----------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 농림지역---------- ---------- ---------- ---------- ---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 공업지역 외----------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 기반시설부담구역 외---------- ---------- ---------- 않는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 --- 해당 ----------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다. ---------- ---------- ---------- ---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 ----- 지구단위계획 외-- ---------- ---------- ---------- ----------
5. 토지분할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나. ---------- ---------- 해당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 ---------- 해당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마. ---------- ---------- 「건축법」 제57조제1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제18조(조건부 허가)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에 따라 ------ ----------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3. ---------- -- 있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관련법령에 따라 ---------- ---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그 밖---------- ----------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단서에 따라 ---------- ---------- ---------- --- 각 호-----.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보전관리지역: ---------- --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별표 1의2 ----------.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1.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2.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발전시설은 별표27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3. ---------- ---- 별표 27----------. ---------.
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	가. ----------

지구 경계로부터 250m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사도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따라 ---------- 않는다.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적합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 가옥 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이상을 이격하되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 않아야 ---------- 거리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가.「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적용을 받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 ---------- 않을 ---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식물관련시설로부터 ---------- - 않을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 적합해야 -----.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1. ---------- 식재해야 ----.
2. 경계울타리는 인접경계에서 1미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막 설치를 해야 한다.	2. ---------- 1미터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발전시설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영구 침사지 등 재해예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 재해예방시설---------- 설치해야 ----.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6.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지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 까지 지중화 하여야 한다.	6. ---------- 사업부지 내 ---------- 송전선로까지 ---------- 해야 ----.
7.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 시 주변 가옥에서 충분이 이격하여야 하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7. ---------- 충분히 이격해야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 -- 적합해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옥상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라. --------- 안쪽 ------ -----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③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500m이내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 500m 이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⑤ ---------- ---------- 별쪼임-------- ---------- ----.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	3. ----------

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경우[다만-- -- 분할한 ---------- ---- 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제20조의3(토지분할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농공단지포함) 내---------- 제20조의3(토지분할허가기준) ① -------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 -------.---------- ---------- ----------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 ----------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1. 관계 법령--------.------ ---------- ---------- ----------.
② 토지분할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3. ---------- ----------
가. 매매토지의 분할 : 토지매매계약서	가. ------- 분할: ------- ------
나. 공유토지의 분할 : 각 지분자의 분할 동의서	나. -------- 분할: ------ ----------
다. 증여의 분할 : 증여계약서	다. ---- 분할: ----------
라. 교환의 분할 : 교환계약서	라. ---- 분할: ----------
마. 판결의 분할 : 판결문	마. ---- 분할: ------
제20조의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군수는 법 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61조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	제20조의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 ---------- ---------- ---------- ---------- ----------

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개최해야 ----.
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② ---------- 제61조제1항 각 호----------.
제20조의5(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제20조의5(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과·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	② ---------- 첨부서류---------- -------.
제20조의6(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① 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22호(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입지거리를 제한한다.	제20조의6(특정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입지제한) ①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별표 1의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2. ---------- 제7호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단,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자가 처리자는 제외)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별표 1의2 제2호가목(2)---------- ---------- --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 않는 ---------- ---------- ----------. ----- 도로는「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 ---------- ---------- ----------「먹는 물관리법」---------- ---------- ---------- ---------- ---------- ---------- ---------- ----------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농림지역---------- 해당 지역----------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나목 (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별표 1의2 제2호 나목---------- 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 대해서---------- 해야 ------.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 해야 ----.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2. ----------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 해야 하고 ----------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	3.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성토(흙쌓기)를 ---------- ---------- ---------- 않도록 ---------- 해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 ---------- ---------- ---------- ---------- 해야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6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6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8. ---------- ---------- ----------. ---------- ----------

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국가기술자격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형질변경 허가-- 「국가기술자격법」---------- ---------- ---------- ---- 확보해야 ------.
9. 산지에서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9.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절개면은------- ----------.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하여 적정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적용)의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 ---------- ---------- ---------- 형질 변경허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 (1)의 규정 에 의하여 녹지·관리·농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

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 않고 ----------
1.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1. 녹지지역: ----------
2.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5. ---------- 「농어촌정비법」---------- ---------- 「농지법」 제22조---------.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 않을 ---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 않을 ---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 않을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1. 토지의 형질변경	1.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2. 토석채취 : 부피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3만세제곱미터 ----------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② ---------- 영 제55조제1항 각 호----------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제외한다)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 제9호까지------ ---------- ---------- ---------- ---------- -------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	② 제1항---------- ---------- 계획관리지역의

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산지 안---------- ----------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 ---------- ---------- ---- 않도록 -------.
③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③ ---------- ---------- ---------- 않거-------- ---------- ---------- ----------.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④ ---------- ---------- ------ 않은 ---------- ---------- ---------- ----------. ------ ---------- ---------- ----.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 ---------- ---------- -------.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구	1. 도시지역: ----------

분에 따른 계수	----------
가. 주거지역 : 0.1	가. 주거지역: --
나. 상업지역 : 0.1	나. 상업지역: --
다. 공업지역 : 0.1	다. 공업지역: --
라. 녹지지역 : 0.2	라. 녹지지역: --
2. 도시외지역 : 0.2	2. 도시 외지역: ----------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①·② (생 략)	제30조의3(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사용해야 ----.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5장 지역·지구·구역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 제12조제1항에 따라 ---------- 자연취락지구 ---------- ---------- 각 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 건축물: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1. ---------- 건축물: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삭 제>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0. ----------별표 1 제19호---------- ---------- ---------- ---------- ---------- ---------- ---- 한정한다---------- ----------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 ----------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자동차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 식물 관련 시설 ---------- 한정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영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 해당 ----------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	10. ----------

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 ---------- ---------- -- 한정한다---------- --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 ---- 자동차 관련 시설----- ----------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 ---------- 식물 관련 시설 ---------- ------ 한정한다---------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 ----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4. ---------- --- 자동차 관련 시설------ ---------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	5. ----------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식물 관련 시설 ---------- ------ 한정한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7. ---------- --- 묘지 관련 시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특화경관지구------ ----------. ---------- ---------- ---------- ---------- ---------- 지역에서의 -- ----------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 ---. ---------- ---------- ----------

지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지역----------.
1. 자연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 용도지역 --------
2. 특화경관지구 :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20미터 이하---------- 용도지역------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자연여건 ---------- 군계획위원회----------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 주거지역---------- ---------- 녹지지역---------- ---------- 확보해야 -------. --- 「건축법」---------- ---------- 않아도 ---------- 그렇지 않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 ---------- ---------- ---------- ---------- ----------.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 ---------- ---------- ---------- ----------.

②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경관지구---------- ---------- -------- 앞면---------- ---.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9. ---------- --- 자동차 관련 시설------ ----------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 ----------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	나. ---- 그 밖에 ---------

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 묘지 관련 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49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9. ---------- 자동차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	나. ---- 그 밖에 ----------

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 ---- 묘지 관련 시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 ---------- ----------. ----- ---------- ---------- ---------- 않는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 ---------- ----------군계획위원회---------- 한정한다---------- -----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② ---------- ---------- ---------- ---------- ---------- ----------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계획관리지역: ---------- 않는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가. ---------- 「물환경보전법」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 않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나. ----------. ----------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 군계획위원회---------- ----------.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 ---------- ---------- ---------- ----------.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일반주거지역: ---------- ----------. ------- ---------- --.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가. 「건축법 시행령」----- ---------- ----------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나. 「건축법 시행령」----- ----------
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
라.「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 ------
마.「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	마. 「건축법 시행령」----- ---------- 식물 관

련시설	련 시설
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 ----------.
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계획관리지역: ----------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다.「건축법시행령」별표 1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라.「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해당 ----------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트 이하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15.10.27.]	19. 계획관리지역: -------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57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1. 취락지구: ----------
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가. 도시지역 외---------- --- 경우: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나. ---------- 경우: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 자연공원: ----------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 --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준산업단지: ----------
7.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같다.	7. ---------- 성장관리계획 ----------.
가.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가. 계획관리지역: ----------
나.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나. ---------- 생산관리지역: ----------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

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 ---------- ---------- ------- 구역---------- ---------- ---------- ----------.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 ---------- ---------- ---------- ---------- -----.
제60조의2(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2(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 ---------- ---------- ---------- ---------- ---------- ---------- ----------.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제60조의3(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 ② ----------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호----------.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의4(방재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

제8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84조제9항에 따라 ----------.
제61조의3(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3(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3.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61조의4(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의	제61조의4(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따라 ---------- 60퍼센트 이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이하	--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10.27.]	19. 계획관리지역: ---------- ------- 성장관리계획----- ---------- ----------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각 호의 범위----------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③ ---------- ---------- ---------- ---------- ----------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 ----------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④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 제1항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삭 제>
<신 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 설>	⑧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 설>	⑨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 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 ----------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각 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1.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3.「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3. ---------- 따른 자연공원: ----------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의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4. ---------- ---------- 농공단지: ---------- ----- 도시지역 외---------- ---------- 한정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 ---------- ---------- --- 각 호에 따른 ----------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1. --------(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너비 ----------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 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상업지역-- ---------- 해당 건축물-- ---------- ---------- ----------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 ---------- ---------- 해당 대지------

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 α)/(1-α)]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여기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 ---------- ---------- ---------- 각 호에 따른 ---------- ---------- ---------- ----------.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 ----------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 ---------- ---------- ---------- -- 않는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별표 18호 자목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기존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적허용) ---------- ---------- ---------- ---------- ---------- --------- 각 호 ---------- ---------- -----.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	제67조(기능) ---------- ----------

음 각 호와 같다.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1. ---------- ---------- 자문하여 그 의견을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8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 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 ---------- ---------- ---- 1 이상이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0조 제4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3. 제70조제4항 ---------- ---------- ---------- 않아 ---------- -----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제출해야 ----.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회의운영) ① ~ ④ (생략)	제70조(회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이 제6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68조제6항--------- ---------- ---------- ---------- ---------- 통보해야 ------.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보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	⑥ ---------- ---- 날---------- ---------- ---------- ---------- ---------- ----------. --- ---------- 관 계 기관 ---------- ---------- 않는다.

다.	
제70조의2(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0조의2(심의 의결방법) ----------.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1. ---------- 않고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5. ----------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 -- 보고해야 ----.
⑥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령 제57조제1의2호의 행위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 영 제57조제1의2호---------- ----------.
제71조의3(공동위원회) ①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장수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1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
②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7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② ---------- 30명 ---------- 제71조에 따른 ---------- 1 이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② ---------- 부서의 장---------- ---------- 팀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 ---------- 응해야 -- ---.
제7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생 략)	제73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통보해야 ---- --.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 ---------- ---------- ---------- --- 해당 ----------

따른다.	----.
제75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 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록) ① ---------- ---------- ---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 ---------- ---------- --. ---------- ---------- ---------- ----------.
제76조(수당 및 여비 등)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등) 영 제115조에 따라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
1. 대면심의 :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1. 대면심의: ---------- ---------- ---------- ----------
2. 서면심의 및 자료검토 : 1회당 100,000원	2. ---------- 자료검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절 계획상임기획단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 군계획상임기획단 ----------.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법」 및 ----------. ----------.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②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획단----------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 (생략)	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응해야 ----.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시행규칙) ---------- 필요한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조정(제71조의 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제62조)

○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한 규정을「국토계획법」제79조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이 중복될 수 있는 조항 삭제(제31조제23호)

○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 대상 필지별 평균표고로 적용함을 표기해 문구 해석에 따른 혼란 예방(별표24, 27)

○ 상위법, 지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변경된 법률 제명 정비

○ 알기쉬운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장수군 조례 제2628호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기증·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제3조,제4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한 사항(제5조)

○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제6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할 경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제10조)

○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한 사항(제11조)

장수군 조례 제2629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

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제4조)

○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등을 규정(제5조)

○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6조)

장수군 조례 제2630호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석면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군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석면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1조 ~ 제2조)

○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제4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처리 지원(제7조 ~ 제8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9조)

장수군 조례 제2631호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건설자재 제조·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장수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주량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 생산 자재 또는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수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 ~ 제2조)

○ 군수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제3조 ~ 제4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제6조)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0조)

장수군 규칙 제1198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함

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표 2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장수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군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유통 분과위원회
2. 인구・일자리・행정 분과위원회
3. 보건・복지・환경 분과위원회
4.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5.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업분야는 별표 3과 같으며, 군수는 전문성과 사업범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심의 조정·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심의 조정·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③ 소위원회의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협의·심의 조정·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장수군 정책자문 요청서

과 제 명	
자 문 내 용	
관 련 서 류 및 자 료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하고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장수군수 : ○ ○ ○ (서명, 인)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2]

장수군 정책자문 회신서

과 제 명	
의 견	ㅇ ㅇ ㅇ ※ 별지 사용 가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자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20 . .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위원장 : ○ ○ ○ (인)

장수군수 귀하

[별표 3]

분과위원회 주요 사업분야

위원회명	소관분야	주 요 사 업 분 야
농림·축산·유통 분과위원회	농업, 축산업, 어업 및 기타 소득업 및 유통전반	○ 장수군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개발 및 자문 ○ 장수군 축산 및 기타 소득업에 대한 개발 및 자문 ○ 장수군 신소득작물 개발 및 자문 ○ 물류·유통정책의 수립 및 자문
인구·일자리·행정 분과위원회	행정혁신, 인구, 일자리 등	○ 자치행정의 혁신 정책 개발 및 자문 ○ 인구대책 수립 및 자문 ○ 일자리 창출 정책개발 및 자문 ○ 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보건·복지·환경 분과위원회	복지, 도시, 환경 등	○ 지역보건 및 위생개선 자문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 중장기 도시발전정책의 개발 및 자문 ○ 환경오염방지대책과 폐기물 정책의 개발 및 자문 ○ 환경, 생태계 보존 정책의 개발 및 자문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지역문화발굴, 관광 등	○ 향토문화 및 예술 진흥 정책 수립 및 자문 ○ 장수 가야문화 유적 정비 등 정책 수립 및 자문 ○ 관광정책 개발 및 자문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신산업발굴, 지역경제 등	○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자문 ○ 지역기업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자문

[별표 4]

20 년 제 회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 00명 - 위 원 장 : - 부위원장 : - 위 원 : ▣ 행 정 : 00명 - ▣ 기 타 : 00명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 참석 : 00명 ▫ 불참 : 00명 -
회의내용	1. 2.	
회 의 록		

1. 제정이유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책자문(제1조, 제2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회의록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부칙 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규칙 제1199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수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을 “장수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의”를 “장수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의2제4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장수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수군공무원----------.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 아. (생 략)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장수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 가. ~ 아.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	<삭 제>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공무원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		

무관련자인 경우 8. 소속 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 전 2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삭 제>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		

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삭 제>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	<삭 제>

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청사·관사·관용 차량·건설중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 전가(轉嫁)----------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당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공무원 ----------
<신 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 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 제4호 각 목의 ---------- 단체----------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 ③ (생 략)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이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 ---------- ---------- ---------- ----------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 --------- ---------- ---------- ----------.
③ 삭 제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	<삭 제>

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18.4.17 시행)의 도입 시행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 제정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규정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 용어 및 개념 정비

- '전가'의 개념 명확화(제13조의3 제3호)
- 제5조의4 삭제로 인한 '산하기관' 용어 정비(제13조의3 제4호)
- 제5조 삭제로 인한 '서면' 용어 정비(제14조의2 제4항)

장수군 규칙 제120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09.0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별표”에 금고 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을 개정

○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의 “별표”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장수군 규칙 제1201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

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매년”을 “매월”로 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감 독			65,000 이하	
코 치			55,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5,000 이하	
	A급	90 ~ 94	49,000 이하	
	B급	80 ~ 89	43,000 이하	
	C급	79 이하	37,000 이하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 임	비 고
100,000	10,000	30,000	50,000	10,000	실 비	1인 기준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단계약은 감독은 3년 이하, 코치는 2년 이하, 선수는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단, 연도 중 신규 계약된 자는 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생 략)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 별표 2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훈련 등) ① 단장은 단원	제13조(훈련 등) ① ----------

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매월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5]

감독, 코치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감 독			60,000 이하	
코 치			50,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0,000 이하	
	A급	90 ~ 94	44,000 이하	
	B급	80 ~ 89	38,000 이하	
	C급	79 이하	32,000 이하	

※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표 5]

감독, 코치 및 선수 연봉 산정표(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등 급	등 급 점 수	연 봉	비 고
감 독			65,000 이하	
코 치			55,000 이하	
선 수	S급	95 ~ 100	55,000 이하	
	A급	90 ~ 94	49,000 이하	
	B급	80 ~ 89	43,000 이하	
	C급	79 이하	37,000 이하	

※ 연봉 금액은 등급에 따른 상한액만 적용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로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
- 무한한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 선수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 임	비 고
80,000	10,000	30,000	30,000	10,000	실 비	1인 기준

※ 감독 및 코치의 숙박비는 일 50,000원으로 한다.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일/원)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간식비	운 임	비 고
80,000	10,000	30,000	50,000	10,000	실 비	1인 기준

※ 그 밖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표준계약서 도입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반영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봉 상한선 및 숙박비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단계약 체결시 「국민체육진흥법」 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준용(제3조)

○ 감독·코치·선수 연봉 상한선 각각 5,000천원 인상(제9조 별표5)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숙박비를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인상(제14조 별표8)

장수군 규칙 제1202호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군의”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철거·폐쇄”를 “철거·폐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수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이전·신·증설보조금”을 “이전·신설·증설보조금”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

☐ 시설투자비 보조금 ☐ 대규모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이 메일	

사업계획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 종)			시설규모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신규고용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투자내역	투자금액 (만원)	총투자액	토지비	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금 만원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장 수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용 포함)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 전체 이전”이란 군의 관할구역 밖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군내에서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않는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철거・폐쇄----------. 2.・3.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장수군 투자유치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 ⑥ (생 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	제4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납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보조금) ①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업종을 말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①----------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③ (생 략)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시설 이전·신·증설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19조제3항---------- -------- 이전·신설·증설보조금---------- ---------- ---------- ---------- ---------- ----------.
<신 설>	제12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허

	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0-2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13조 ----------. ----------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5조·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1. 개정이유

○ 한정되어 있는 투자유치 대상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신설(제12조)

○ 별지 서식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 신설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장수군 공고 제 2022 - 1164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계획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2023년 조직개편 및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 등을 장수군 정원에 반영하여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기존 573명에서 575명으로 2명 증원 조정

가)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 ⇨ 556명(동결)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 19명(증 2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3)

1. 총 계 : 573명 ⇒ 575명(증 2명)

1) 일반직 계 : 536명 ⇒ 537명(증 1명)

※ 장수군의회 정책지원관(증 2명)

※ 논개사당 관리(감 1명)

2) 연구직 계 : 6명 ⇒ 7명(증 1명)

※ 가야 역사관 운영 등 학예연구사(증 1명)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22. 11월 중

나. 전라북도 조례안 검토, 공포·시행 : 2022. 12월 중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련법령 1부.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백영선 (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3명”을 “5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5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536					
4급	4	3		1		
4급 ~ 5급	1					1
5급	25	14	2	2	1	6
6급 이하	506					
전문경력관 계	1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7					
연구사	7					
지도직 계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57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인	2. ---------- 19명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면
총 계	573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535					
4급	4	3		1		
4급 ~5급	1					1
5급	25	14	2	2	1	6
6급 이하 계	505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계	6					
연구사	6					
지도직 계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별표 3】

장수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5					
정무직계	1					
군수	1	1				
일반직 계	536					
4급	4	3		1		
4급 ~ 5급	1					1
5급	25	14	2	2	1	6
6급 이하	506					
전문경력관 계	1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계	7					
연구사	7					
지도직 계	29					
지도관	3			3		
지도사	26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정원증원 :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 정원감원 : 7급 1명
  · 장수군의회 정책지원관 2명 증원은 7급 1명, 8급 1명으로 산정
  · 가야역사관 운영에 따른 학예연구사 1명 증원은 일반직 7급 감원으로 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기준 7급 10호봉, 8급 6호봉 전제
 - 1~5차년도 비용추계는 2022년 기준 인건비 연도별 임금인상율 2.0%적용

(단위:천원)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 계
지출 (b)	일반회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소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수입 (a)	일반회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소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총비용(b-a)		0	0	0	0	0	0

3.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 계
의존재원	교부세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소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자체수입		-	-	-	-	-	-
	소계	-	-	-	-	-	-
기 타							
합 계		59,890	61,088	62,310	63,556	64,827	311,671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 백영선(063-350-2137)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2022년도 기준 비용추계액 : 59,890천원

구 분	조정(명)	소요비용	산출내역	비고 (기준)
정원	소계	59,890천원		
	7급(+1)	33,834천원	○ 33,834천원 × 1명 = 33,834천원	7급 10호봉
	8급(+1)	26,056천원	○ 26,056천원 × 1명 = 26,056천원	8급 6호봉

※ 수당제외

2. 상기 금액은 정원 상 증가 추계임

- 2022년도 인건비(본봉) 기준으로 작성함

[참고] 개정안 본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8. 조례제1811호>

제2조(정원의 총수) 장수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5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고 제 2022 - 1165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계획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가. 장수군의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과주의 조직 구성

나. 장수군 민선 8기 비전의 효율적·효과적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설계

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인프라 구축 등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구성

라.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및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간 업무조정 등 재배치 및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구성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인구정책 및 지역소멸기금 대응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안 제4조)

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광팀 업무를 관광정책팀과 관광시설팀으로 분리·신설하고 축제팀 업무를 관광정책팀 통합하며, 축제진흥팀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과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며, 체육팀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함.(안 제5조)

다. 축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유통과 소관 축산분야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함.(안 제6조)

라.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농축산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안 제6조)

마. 장수군 공원업무를 총괄 및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원레저팀을 신설하고 산림과 명칭을 산림공원과로 변경(안 제5조)

바. 각종 사회재난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팀을 신설(안 제5조)

사.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및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업무를 추진하고, 과수원예분야 보조사업은 농산유통과로 이관함.(안 제12조)

아. 농업기술센터 과수과를 기술보급과로 변경(안 제12조)

자. 체육분야 정책 및 시설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팀을 체육정책팀과 체육시설팀으로 분리·신설하고, 시설관리팀 업무를 체육시설팀에 통합한 후 시설관리팀을 폐지하며 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며, 대곡관광지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금후 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안 제출 등 : 2022. 11월중

다. 전라북도 조례안 검토, 공포·시행 :2022. 12월 중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전화 : 063-350-2137, FAX : 063-350-5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백영선(전화 : 063-350-213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총괄

9.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제5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문화 체육시설”을 “문화시설”로 한다.

바.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농약 관리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를 “민생경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청년지원 업무

차. 생활민원 업무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축산유통”을 “농산유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원예”를 “과수・원예”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총괄 및”을 “총괄,”로, “육성”을 “육성 및 농업 분야 6차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활력플러스사업(행정, 사업단), 식품클러스터 사업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을 “산림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제6조제2항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대재해업무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각각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4조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한누리전당・다목적체육관・대곡관광지”를 “한누리전

당・다목적체육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진흥 계획 수립・지원사업

5. 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1.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3. 「장수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산

림공원과장”으로 한다.

4.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5. 「장수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6.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7. 「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8. 「장수군 농림축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과수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9.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농축산유통과장, 과수과장”을 “농산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10. 「장수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1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활력팀장”을 “농촌활력팀장”으로 한다.

12. 「장수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13.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과수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14.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과장”을 각각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15.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16. 「장수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17. 「장수군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18. 「장수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19.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20.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21.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한다.

별표의 산림농업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농축산유통과”를 “농산유통과”로 하고, “과수과, 산림공원과”를 “기술보급과, 산림공원과”로 한다.

별표의 사회문화분야의 담당부서란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22. 「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3.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24.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각각 “민생경제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25.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민생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6. 「장수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팀장”을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7.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체육팀장”을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8.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29.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과수과”를 “기술보급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총괄
<신 설>	9.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문화관광과----------.
② 행정복지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행정지원과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생 략)	아. (현행 사목과 같음)
아. (생 략)	사. (현행 아목과 같음)
<신 설>	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체육관광과	5. 문화관광----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지원사업	<삭 제>
라. 문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다. 문화시설 ----------
<신 설>	바.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
마.·바. (생 략)	라.·마.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농산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① ----------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
② 농산업건설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농업정책과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및 농업 분야 6차 산업	<삭 제>
<신 설>	바.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농약 관리
마.·바. (생 략)	라.·마. (현행 마목 및 바목

	과 같음)
2. 일자리경제과	2. 민생경제--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총괄	<삭 제>
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삭 제>
마. ~ 사. (생 략)	다. ~ 마.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청년지원 업무
<신 설>	차. 생활민원 업무
3. 농축산유통과	3. 농산유통--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일반원예, 지역특화 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나. 과수·원예----------
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및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다. ---------- 총괄, ---------- 육성 및 농업 분야 6차 산업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신활력플러스사업(행정, 사업단), 식품클러스터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림과	5. 산림공원----------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6. 안전재난과	6.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중대재해업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제13조(설치) ① ---------- ---------- ---------- ---- 체육시설사업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에 둔다.	② ---------- 체육시설사업소---------- ----------.
제14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 ---------- ---------- ----------.
제15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5조(업무) ---------- ----------.
1. 한누리전당·다목적체육관·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등의 관리	1. 한누리전당·다목적체육관-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체육진흥 계획 수립·지원사업
<신 설>	5. 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고] 개정안 본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의 국장 및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나누어 맡는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기획·조정·평가, 군의회 운영지원 및 국제협력

2.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용, 예산편성·운용,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3. 군 상징물 관리, 군정홍보

4. 각종 정책개발 및 공약사업 관리

5. 행정·지역혁신업무, 분권

6. 건강도시 업무 총괄

7. 군 행정 감사, 공직자 직무·비위 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 사무 총괄

8.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총괄

9.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지원과

가. 공무원의 복무·후생, 문서관리 및 의전 등 행정지원

나.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

다.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라. 지방행정 통신망 설치·관리 및 정보 통신보안

마. 지방 행정정보화추진, 종합전산실 운영

바. 공무원단체 지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과거사 정리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아. 자원봉사 업무

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2. 주민복지과

가. 사회복지종합계획과 주민 생활 지원 기획 조정 및 시책 수립·추진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복지 및 의료보호

다. 복지 및 주민 생활 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통지

라.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여성 활동 지원 육성

마.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바. 가정의례업무, 노인복지

3. 재무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수납관리 및 국세의 위탁징수

나. 세외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군 금고 관리

다. 세입·세출예산 결산, 공사의 도급·물품매입 등 계약 및 공무원 급여관리

라. 공유재산 총괄관리, 물품 및 청사 유지 관리

마. 주택가격 평가 업무 및 과세표준 결정

바. 재무회계 운영 사무

4. 민원과

가.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각종 민원사무 처리

나.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토지거래 규제

다. 지적공부 관리, 지적 민원 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라.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주택사업 추진 및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

마. 주거 급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종교 관련 업무

나. 가야문화 유산 등 문화재 복원 및 활용

다. 문화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라. 관광진흥 계획 수립·추진

마. 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바. 대곡관광지 운영 관리

6. 환경위생과

가. 토양·수질·대기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유독물 판매업 관리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대책,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다. 공중·환경위생 등 위생 관련 업무

라. 생태 복원 업무

마.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

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

아.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관리

제6조(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농산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② 농산업건설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정책과

가. 농업정책 추진 총괄이나 농업인 복지업무

나. 농촌소득사업(소득 금고, 경영 회생) 지원 및 관리

다. 농지의 이용이나 관리

라.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마을만들기 사업

마. 귀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 교류 업무

바.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농약 관리

2. 민생경제과

가.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나. 공공근로, 고용 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라. 전통시장 관리나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마. 에너지 관련 업무

바. 삭제

사. 삭제

아. 도시재생 업무

자. 청년지원 업무

차. 생활민원 업무

3. 농산유통과

가.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농약 관리

나. 과수·원예, 지역특화 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농업 분야 6차 산업

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및 브랜드 관리

마. 신활력플러스사업(행정, 사업단), 식품클러스터 사업

4. 축산과

가. 축산소득사업 및 가축 증식,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내수면 어업

나. 축산물 위생 및 유통,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

다. 한우 유전자 허브 사업 및 신 활력 사업 추진

라. 장수 한우 지방공사 운영 관리

마. 장수 한우 클러스터 사업

바. 말 산업 육성계획 수립·지원사업

5. 산림공원과

가. 조림사업,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종묘생산업자 등록, 임업진흥 권역 관리

나.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산림경영계획

다. 산림사업 신고수리, 목재생산업등록

라. 전문임업인 선정 및 관리, 군유림 관리, 산림소득지원사업,

마. 산림소득공모사업, 산촌생태마을 관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바. 산림보호구역 관리, 토석(토사)채취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사. 보전산지지정 및 해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아. 산불방지대책 및 수립, 산림병해충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자. 보호수 지정·해제, 임산물굴취·채취허가

차. 산사태예방, 임도시설 유지관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카. 와룡·방화동 휴양지 운영관리, 등산로 관리, 군립공원 조성관리

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소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

파. 농촌 테마공원 운영 관리

6. 안전재난과

가. 안전 정책 총괄·조정, 민방위 기본계획·비상 대책 수립·추진, 인력지원 관련 사항

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 관리 기능 강화 및 신속한 응급복구 대처

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복구지원

라.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 관련 응급수습대책 수립

마. 하천관리

바.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사. 중대재해업무

7. 건설교통과

가.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 및 지역 소규모 사업추진

나. 교통행정 및 운수 행정업무 추진

다. 도시계획 입안·추진, 도시환경 개선

라. 토목공사 추진 및 감독

마. 농업기반조성 및 한해 대책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의료원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장계면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원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에 두고,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장 등) 의료원·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에 각각 원

장・지소장・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의료원・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업무) ① 원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의 농촌지도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한다.

② 기술센터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두며,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면에 둔다.

제11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 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농업인 학습조직, 농업경영조직 지원육성 및 영농상담관리
2. 영농교육, 농기계 수리봉사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3. 농림사업, 농업정보제공 및 농촌진흥업무 추진

4. 잠업, 생약, 차 등 특용작물 생산지원, 과수품종개발, 원예·화훼생산 기술지도

5. 농업환경개선, 병해충예찰방제 및 농업개발시험포 경영관리

6. 농기계사업단 운영·관리

7. 식량증산, 농업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

8. 과수산업 육성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사업소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에 둔다.

제14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한누리전당·다목적체육관, 논개생가지 등의 관리

2. 하수도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업무

3. 상수도 현대화사업, 저수조 및 상수도 시설관리

4. 체육진흥 계획 수립·지원사업

5. 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제5장 읍 · 면

제16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지방세징수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18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장수군 공고 제2022-1183호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박춘실의병장을 기념하기 위한 '박춘실 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 기존 현충시설 기념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박춘실 의병장을 추모하는 '박춘실 기념관' 개관에 따라 기존 기념관별 제정된 조례를 통합하여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나. 「장수군 정인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장수군 전해산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다. 별표 추가 (별표 서식-장수군 기념관 명칭 및 위치)

라. 별지 추가 (별지 서식-기념관 사용 허가승인(변경) 요청서)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350-2071, 팩스 : 063-350-5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담당자 (전화 063-350-20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별표의 기념관 등 주요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란 관리 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날(전·후 1일 포함), 추석날(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과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정하는 날

4.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5조(관람 시간)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관람은 개관 개시 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기념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 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조치 등) ①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정인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장수군 전해산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

장수군 기념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 기념관 시설

명 칭	위 치	주 요 시 설
정인승 기념관	장수군 계북면 양악길 119	○기념관, 사당, 정자 등
전해산 기념관	장수군 번암면 성암길 92	○기념관, 제당, 비각 등
박춘실 기념관	장수군 계북면 문성길 4	○기념관, 영상실, 교육장 등

【별지 서식】

기념관 사용 허가 승인(변경) 요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자 택	
				근무처	
전시(행사) 명					
전시(행사) 내용					
대 관 기 간	20 . . ~ . . (총 일간)		전시물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전시물 반출기간		
전 시 목 록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첨부 : 전시(행사)계획 및 단체소개 자료 부

장 수 군 수 귀하

장수군 공고 제2022-1184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계획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장 수 군 수

1. 제안이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중 도비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등의 자긍심 제고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월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예우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 063-350-2071, 팩스 : 063-350-5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담당자 (전화 063-350-20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8.12.12.>

2. 삭제 <2018.12.1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1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2. 사망위로금 신청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분기말 월(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9.12.2.>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액) ---------- ----------월 11만원을 ---------- ---------- ---------- ------.

장수군 고시 제2022 - 165호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4차)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장 수 군 수

1. **사업명칭 :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인 천천면 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사업위치 :** 장수군 천천면 일원
4. **사 업 비 : 6,0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6개년)
6.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행복나눔터 신축, 하늘내 체육공원 정비, 장항문화회관 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 : 하늘내 둘레길 정비, 간판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7. **사업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8.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063-3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고시 제 2022-16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확대 개발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47-12
   ○ 면 적 : 1,111㎡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44,050,000원

4. 사업 예정 기간 : 2022. 11. ~ 2023. 12.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이 태 영

장수군 고시 제 2022-16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농지확대 개발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647-7
   ○ 면 적 : 194㎡

3. 사업비 필요금액 : 금44,050,000원

4. 사업 예정 기간 : 2022. 11. ~ 2023. 12.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박 춘 자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